

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민사소송의 변론기일, 변론준비기일, 심문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민사소송법」(법률 제18396호, 2021. 8. 17. 공포, 2021. 11. 18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민사조정에서도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 것이 가능하게 됨
- 이에 영상 조정기일의 요건 및 절차 등 민사조정에서 영상 조정기일을 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 신설)
-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조정사무수행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3 신설)
-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

를 이용한 영상 조정위원 의견 청취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(안
제12조제2항 신설)

4.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조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) 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.

제6조의3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)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

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2 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)</p> <p>① <u>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조정기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제6조의3 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)</p> <p><u>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2조 (전문적인 지식,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)</p>	<p>제12조 (전문적인 지식,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)</p>

(생 략)

<신 설>

① (현행 본문과 같음)

②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50